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가단150488 판결 [사해행위 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 중 2/9지분에 관하여, ① C과 피고 등이 2022. 4. 14.경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는 C에게 이 법원(☞ 소관 : 등기국) 2022. 5. 3. 접수 제652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박관근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가. 원고는 보증보험 등의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059207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4. 4. 29.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4. 5. 29. 확정되었습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2022. 11. 30. 현재 18,459,935원입니다.

2. 사해행위 취소

가. D의 사망과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채무자인 C의 '부(父)' D이 2022. 4. 14. 사망하자, C은 상속인(망 D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자녀들인 E, F, C이 있었으므로, C의 상속지분은 2/9이고,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5. 3. 접수 제65220호로 2022. 4.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나. 사해행위로서의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 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C은 D의 상속인들과의 2022. 4. 14.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자신의 모친인 피고에게 양도하였고(상속재산 협의분할 자체는 전제 상속인들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 지분에 관하여 한정하여 보면,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은 C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결과 C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C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C의 무자력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며,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만 감안하더라도 C은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 초과(즉, 공동담보 부족)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더욱 악화됨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라. 채무자(C) 및 수익자의 악의

- 1) C은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무자력이 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채무자인 C의 사해의 의사는 인정되며(더욱이,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대법원 판례는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2) 피고는 C의 모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C의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C이 무자력이 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이 있었음이 명백하고,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3) 한편, 사해행위 취소에서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도 마찬가지임)는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채무자인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으므로, 그의 사해의사는 분명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입증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수익자인 피고는 스스로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4) 그런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그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그 중 수익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는 취지는 채무자의 공평

을 해하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에 형평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 수익자가 채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형편을 잘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채무자로부터 쉽게 임의적인 협력을 얻어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먼저 채권의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대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에 대해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는 C의 모친이고, 더군다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행하면서 가족 간에 서로의 형편에 대하여 논함은 불가피하므로, 피고가 악의임은 두말할 필요 없다 하겠습니까.

더욱이 C의 모친인 피고가 C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하면서 피고가 C의 재정적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였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 또한 알았다고 봄(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은 경험칙상 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C은 그 책임재산 전체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더욱 악화된 점,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모친인 피고와 C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인하여 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은 공동담보를 상실함으로써 그 채권을 회수할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된 점만 보더라도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원상회복(원물반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과 피고 사이의 2022. 4. 14.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원래 소외 C의 상속지분인 2/9지분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5. 3. 접수 제652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인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의 취소와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중 C 상속지분 2/9의 말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끝-

<아파트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도봉구 , ,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서울 도봉구

프리캐스트콘크리트조 콘크리트 평스라브 15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도봉구 대 28152.5㎡

2. 서울 도봉구 대 409.6㎡

3. 서울 도봉구 대 54.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5층 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73.89㎡

(대지권의 표시)

1, 2, 3, 소유권 28616.5분의 40.55. 끝.

